

#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6. 10. 30  
산업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10월 10일 이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10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(96. 10. 23) 산업위원회 상정  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조병돈)

### 가. 제안이유

-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(1995. 12. 6 법률 제4993호)됨에 따라 풍수해 대책법의 제규정을 자연재해 대책법 제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수방단에 대한 임무부여(안 제2조)
- 2) 수방단원의 임명 또는 위촉사항과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함(안 제3조)
- 3)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편성기준을 15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함(안 제5조)
- 4)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소집 및 해제 결과를 3년간 기록·보존하여야 함(안 제6조)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( 전문위원 김태신 )

-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'96. 3. 1 조례 제100호로 공포된 이천시 수방단운영조례를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

대책법으로 전문개정('95. 12. 6 법률 제4993호)됨에 따라 풍수해 대책법의 제  
규정을 자연재해 대책법 제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자연재해 대책법 제  
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절  
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